비조치의견서 (☑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	미소시의선시 (以미소시 □소시 □기타)
	담당 부서IT검사국담당자 (직위, 성명)안기복 선임검사역연락처 연락처02-3145-7429
요청대상 행위	□ 금융회사가 내부통신망을 사용자/업무 기준에 따라 논리적으로 분리*하여 구성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망분리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 * SDN(Software Define Network)을 적용하여 VRF(Virtual Router Forwarding) 기반으로 네트워크 분리
판단	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판단이유	□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·차단해야 하고,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이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며(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),
	○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담당, 개발담당 및 외부직원 등 업무 특성별로 네트 워크를 적절하게 분리하여 IP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(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18조제4항).
	□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한 내부통신망을 사용자(내부직원/외부직원) 및 업무(일반/개발) 구분에 따라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.
	 귀사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,
	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은 내부통신망을 분리하는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가 스스로 판단과 책임하에 안전한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	※ 동 의견서는 개별 금융회사의 업무환경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- **** 비조치의견서의 호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 항·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

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 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 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